



제418회국회(정기회)
제2차 교육위원회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어린이집 급식시설·설비 설치, 영양사·조리사 배치
및 비용보조 >

■ 황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485호)

2024. 9.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강대훈

【 목 차 】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 어린이집 급식시설·설비 설치, 영양사·조리사 배치 및 비용보조	2
【참고자료 1】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급식 관리 및 예산, 인력 지원	13
【참고자료 2】 급식위생 관리지원금	15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황희의원 등 13인

2. 발의연월일 : 2024. 8. 1.

3. 회부연월일 : 2024. 8. 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어린이집의 원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급식관리 기준을 준수하여 영유아에게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하여야 함.

그러나 일부 어린이집에서 부실급식과 관련한 민원이 제기되거나 식중독 등의 집단 감염병이 발병하는 등 급식사고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급식사고를 방지하고 질 좋은 급식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집이 급식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제대로 갖추고 영양사를 두어 전담관리를 하는 등 급식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야 할 것임.

이에 어린이집 급식시설·설비의 설치와 영양사 배치에 관한 준수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급식시설·설비비와 영양사 인건비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증진과 성장발달을 위하여 질 좋고 안전한 급식이 실시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 등).

Ⅲ. 검토의견

□ 어린이집 급식시설·설비 설치, 영양사·조리사 배치 및 비용보조

개정안은 어린이집 원장으로 하여금 영유아에게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영양사와 조리사를 두도록 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급식시설·설비비, 영양사·조리사의 인건비를 보조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3조 등).

현행	개정안
제33조(급식 관리) (생략)	제33조(급식 관리)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설>	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제1항에 따른 급식을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영양사와 「식품위생법」 제53조에 따른 조리사를 두어야 한다.
법률 제20289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20289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u>보육교직원(대체</u>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 ----- ----- ----- <u>급식시설·설비비,</u>

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제42조의2(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할 수 있다.

1. · 2. (생략)

3. 제33조에 따른 급식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4. ~ 9. (생략)

② ~ ④ (생략)

제44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교육
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은 어린이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그 설치·

보육교직원(대체교사를 포함한다)
및 영양사·조리사의-----

제42조의2(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
자 보호) ① -----

1. · 2. (현행과 같음)

3. 제33조제1항에 따른 급식관리
기준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급식시설·설
비기준이나 영양사·조리사의
배치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4. ~ 9.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4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

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 4의7. (생략) 4의8. 제33조에 따른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하지 아니한 <u>경우</u> 4의9. ~ 8. (생략)	----- -----. 1. ~ 4의7. (현행과 같음) 4의8. ----- ----- -----<u>경우(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급식시설·설비기준이나 영양사·조리사의 배치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u> 4의9. ~ 8. (현행과 같음)
---	---

현행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은 어린이집의 건강·급식·위생관리를 위하여 어린이집 설치기준을 두어 조리실을 설치하도록 하고, 보육교직원 배치기준에 따라 영양사와 조리원을 두고 있으며, 어린이집 운영기준에 따라 급식관리 및 위생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음.

【영유아보육법 관련 규정】

「영유아보육법」
제15조(어린이집 설치기준)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u>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u>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놀이터, 비상재해대비시설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와 관련된 사항은 각각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4까지에 따른다. 제17조(보육교직원의 배치) ⑤ <u>보육교직원 및 그 밖의 인력의 배치기준</u>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①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u>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u>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1>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3. 어린이집의 설비기준 나. 조리실 ① 조리실은 채광이 잘 되도록 하고, 기계 환기시설을 하여 청정한 실내 환경을 유지하도록 하며, 창문에는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식기를 소독하고 위생적으로 취사 및 조리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별표2>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 1. 어린이집에 두어야 하는 보육교직원의 수 라. 영양사 영유아 100명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경우에 영양사 1명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영유아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이 단독으로 영양사를 두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같거나 인접한 시군구의 2개 이내 어린이집이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다. 마. 조리원 영유아 40명 이상 80명 이하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조리원 1명을 두며, 영유아가 80명을 초과할 때마다 1명씩 증원한다.	
<별표8> 어린이집의 운영기준 3. 안전·급식 및 위생관리 나. 급식관리 2) 원장등은 영유아가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따라 급식을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양사(2개 이내의 어린이집이 공동으로 두는 영양사를 포함한다)를 두고 있지 아니한 100명 미만의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육아종합지원센터, 보건소 및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어린이집 급식관리지원센터 등에서 근무하는 영양사의 지도를 받아 식단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 위생관리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기준일 24.8.7.)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집이 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영양사와 조리사를 두도록 법률에 규정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어린이집에서 질 좋고 안전한 급식을 실시할 수 있도록 급식관리와 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다음의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개정안 제33조제2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집이 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영양사와 조리사를 두도록 하고 있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현행 법령에서 이미 어린이집 설치기준,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어린이집 운영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정안에 따른 차이점이 분명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아울러, 현행 규정은 보육하는 영유아 수 등 어린이집의 규모를 고려하여 영양사와 조리원을 두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의 취지가 어린이집의 규모와 무관하게 모든 어린이집에 일률적으로 영양사와 조리사를 배치하도록 하려는 것이라면 인력 채용 및 인건비 부담을 수반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봄.

현행 규정에 따르면 영유아 100명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에는 영양사 1명을 두는 것을 원칙¹⁾으로 하고, 영유아 40명 이상 80명 이하인 어린이집의 경우 조리원 1명을 두되, 영유아가 80명을 초과할 때마다 조리원을 1명씩 증원하도록 하고 있음.

참고로, 유치원의 경우 「유아교육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교원 외에 영양사 등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배치하는 직원의 수는

1) 2024년 보육사업안내(교육부 지침)에 따르면, 영유아 100인 미만을 보육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의2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하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의 영양사 지도를 받아 식단을 작성해야 함. 다만, 급식소에 영양사를 두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음. ※ 시설유형에 따라 어린이집에서 제공되는 모든 급식과 간식에 대하여 식단 작성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관할청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음.²⁾

<참고자료1: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급식 관리 및 예산, 인력 지원>

둘째, 개정안 제36조는 급식시설·설비비와 영양사·조리사 인건비에 대한 비용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안정적인 재원 확보 담보를 통해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급식의 질적 개선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영유아보육법」 제36조³⁾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육교사 외에 조리원 등 다른 보육교직원의 인건비도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인건비 보조 대상을 보육교사에서 보육교직원으로 개정(2024.2.13. 일부개정, 2024.8.14. 시행)한 바 있으며,

보육교직원에는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외에 간호사, 영양사, 조

2) 「유아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구분) ①유치원에는 교원으로 원장·원감·수석교사 및 교사를 두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유치원에는 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②유치원에는 교원외에 계약의사, 영양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행정직원 등을 둘 수 있다.

③유치원에 두는 교원과 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의 정원·배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4조(직원의 배치기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유치원에는 필요한 경우 직원을 1명 이상 둘 수 있으며, 유치원별 배치기준은 관할청이 정한다.

3) 「영유아보육법」 [시행 2024. 8. 7.] [법률 제20219호, 2024. 2. 6., 일부개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 2024. 8. 14.] [법률 제20289호, 2024. 2. 13., 일부개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직원(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23636호)

리원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개정안에 따른 영양사 및 조리사⁴⁾의 인건비 지원의 근거는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현재 영양사 및 조리사의 인건비 경비 보조와 관련하여, ①인건비 정부지원 어린이집(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어린이집)의 경우 조리원(조리사)을 별도 채용한 경우 월 지급액의 100%를 1명(단, 현원 40인 미만 시설이라 하더라도 조리원을 별도 채용한 경우 지원)에 한하여 지원하고 있고, ②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민간,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기관보육료⁵⁾를 통한 수입 보전으로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참고로, '24년부터는 집단급식소 신고의무 대상(50인 이상) 어린이집 중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민간어린이집, 법인·단체등어린이집 중 일부)에 대해서는 실제 급식소를 운영하는 어린이집 개소당 월 30만원(5,789개소)의 '급식위생 관리지원금'을 지원함. <참고자료2: 급식위생 관리지원금>

한편, 개정안의 급식시설·설비비 지원과 관련하여, 현행법 제34조의 무상보육 원칙에 따라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조사를 통해 예산의 범

4) 개정안의 '영양사와 조리사의 인건비'와 관련하여, 시행규칙 [별표2]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는 조리사가 아닌 조리원을 두고 있으며, 식품위생법에 따라 상시 1회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어린이집은 조리사 면허를 갖춘 조리원을 배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조리원'은 '조리사'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임.

5)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을 제외한 어린이집 중 0~2세 아동 또는 장애아(외국인 아동 포함)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으로 기관보육료 지원요건을 충족한 어린이집에 보육아동 1인당 지원기준 단가에 따라 지원함.

< 2024년도 지원금액 (1인당 지원기준단가) >

(단위: 원)

연령	0세반	1세반	2세반	장애아
기관보육료	629,000	342,000	232,000	686,000

위에서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하도록 하고 있으며, 무상보육을 위한 재정지원 기준인 표준보육비용에 시설 설비비가 포함되어 있어 현행 규정으로도 급식시설·설비비 지원이 가능함을 고려할 필요도 있음.⁶⁾

따라서, 현행 법령의 체계에서도 개정안에 따른 영양사 및 조리사의 인건비 지원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며, 이와 별개로 실제로 예산을 지원하는 문제는 한정된 재원의 배분과 관련된 사항으로 재정당국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임.

이에 대해 교육부는 현재 인건비 정부지원 어린이집에 원장, 보육교사 외에도 조리원, 치료사(장애아 전문·통합 어린이집)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고, '25년 예산안에 현 지원대상에 대한 인건비를 인상할 계획이며,

6) 「영유아보육법」

제34조(무상보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하되, 그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3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정할 수 있다.

⑦ 교육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물가상승률, 최저임금 상승률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제6조에 따른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표준보육비용 조사의 방법과 내용)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34조제7항에 따라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때에는 전년도 12월 말까지 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연도 말까지 조사를 완료해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34조제7항에 따라 결정된 표준보육비용을 다음 해 3월 말까지 공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육교직원 인건비

2. 급식·간식의 재료비

3. 교재·교구비

4. 시설 설비비

5. 관리 운영비

표준보육비용 상 시설비 중 일부로 급식시설·설비비가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규모를 산출하는 것은 어렵다는 의견임.

참고로, 교육부는 어린이집의 건강, 영양 및 안전관리를 위해 지침(보육사업안내)을 통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부실급식 관련 집단 민원 제기, 급식사고, 집단감염병 등이 발생한 경우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교육부장관에게 보고⁷⁾하도록 하고 있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도 이후 어린이집 식중독 발생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보임.

【급식 관련 지도점검 현황(2021년~2023년)】

(단위 : 명)

구분	2021	2022	2023
지도점검	450	393	312

자료: 교육부(보육통합정보시스템, 2020년 이전 급식·위생으로 분류)

【어린이집 식중독 확정 현황(2019년~2023년)】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잠정)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건	명
집단급식소	8	114	5	74	21	271	17	247	10	162
집단급식소 미설치	2	17	3	19	14	136	10	77	6	39
계	10	131	8	93	35	407	27	324	16	201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19년~'22년은 확정 건수, '23년은 잠정 건수)⁸⁾

7) [급식관리 기준 위반 관련 지도점검 체계]

- (체계) 지자체 민원 접수, 어린이집이용불편신고센터, 수사·정기 점검 등 **급식 관련 신고 → 시군구 등 현장 점검 →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급식 관련 세부기준) ① 상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거나 보관한 경우 ② 소비기한이 지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거나 보관한 경우 ③ 이미 급식에 제공되었던 음식물을 재사용한 경우 ④ 식단표 미준수 ⑤ 원산지 표시 미실시 ⑥ 급식을 어린이집에서 직접 조리하여 제공하지 않음 ⑦ 기타 그 밖에 급식관리 기준을 위반한 경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4조[별표8]>

개정안에 대해 교육부는 영유아에게 질 좋고 안전한 급식을 실시하기 위한 취지에 공감하나, 시설·설비와 관련해서는 현행 조리실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으로 모든 어린이집에 적용하여 설치되었기에 필요한 경우 하위법령의 개정을 통해서 개정안의 입법 취지가 달성될 수 있고,

영양사·조리사의 배치에 관해서는 어린이집의 종류, 어린이집의 규모, 재원 중인 영유아 수 등에 대한 고려 없이 모든 어린이집에 영양사·조리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규정은 어린이집 운영상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인건비 보조와 관련해서는 「영유아보육법」 개정('24.8.14.)을 통해 ‘보육교직원’에 영양사·조리사 등을 포함하여 인건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개정 실익이 적다는 의견임.

대한영양사협회는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조리원의 인건비는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영양사 인건비는 국고 지원이 되지 않고 있고, 특히 '21년 10월 강화된 영양사 배치기준⁹⁾의 재정적 실효성 확보를 위

8) [식중독 발생 시 대응 체계]

- (보고체계) 동일한 원인으로 추정되는 설사 등 식중독 유사 증세 환자가 발생한 경우 **원장은 시군구에 신고** → 시군구 위생부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소 등 감염부서는 질병관리청 보고, **보육부서는 시도에 보고** → 시도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교육부에 상황 보고 및 공유**
- (조사체계) 원인·역학조사 실시(위생부서는 보존식 및 가검물 채취, 식품유통·반입상황·조리·이동경로에 대한 계통 조사, 감염부서는 역학조사 및 가검물 채취, 환자 치료 및 필요시 입원 격리 등의 조사)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식중독 발생 원인 및 원인균 등 검사 결과를 통해 최종 식중독 확정
- ※ 식중독 보고 의무자 ①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를 진단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한의사 ②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한 식품등으로 인하여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는 자를 발견한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 <식품위생법 제86조>

9) 영유아보육법상 영양사 배치기준 개정(시행 2021.10.1.)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영유아 급식 제공을 위해 영양사 배치기준 강화를 위해 영유아 100인 이상 199인 이하 어린이집의 영양사 공동배치 기준을 기존 5개

해서라도 영양사 인건비의 국고 지원은 필수적이며, 유치원 영양(교)사 인건비¹⁰⁾의 경우 국고 지원되고 있으므로 유치원과의 형평성을 위해 영양사 인건비는 국가에서 지원되어야 한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192

소에서 2개소로 축소함.

10) 유치원 설립주체별 인건비 지원 기준(자료: 대한영양사협회)

- 국·공립유치원: 국고에서 100% 지원
 - 사립유치원: 교원 1인당 월 64만원 지원 (기본급 보조 60만원, 장기근속수당 4만원)
- [서울, 대구] 지역 사립유치원 영양교사 인건비 100% 교육청 지원

【참고자료 1】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급식 관리 및 예산, 인력 지원

① (급식 관리)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을 적용받고, 유치원은 원아 수에 따라 학교급식법과 유아교육법을 적용받으며, 적용 법령에 따른 차이점은 다음의 표와 같음

구 분	유치원				어린이집		
	50명 미만	50명 ~ 100명 미만	100 ~ 200명 미만	200명 이상	100명 미만	100 ~ 200명 미만	200명 이상
적용법령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영유아보육법		
관련지침	· 건강안전관리지침	· 유치원급식 위생관리 안내서 · 유치원급식 운영·영양관리 안내서			· 보육사업 안내		
급식원칙	-	· 유치원장은 급식을 직접 관리·운영			· 어린이집에서 직접조리하여 공급		
시설기준	·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별표] 급식 시설·설비기준	·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별표1] 급식시설의 세부기준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1]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3. 어린이집의 구조 및 설비기준 나. 조리실		
영양관리	-	·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별표3] 영양관리기준을 준수한 영양관리			·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의해 공급		
식재료 관리	-	·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별표2]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을 준수하여 식재료 선정·구매			-		
위생관리	-	· 학교급식은 식단작성, 식재료 구매·검수·보관·세척·조리, 운반, 배식, 급식기구 세척 및 소독 등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혼입되거나 식품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위생과 안전관리를 철저 ·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별표4] 학교급식의 위생·안전관리기준 준수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8] 어린이집의 운영기준 3. 안전·급식 및 위생관리 나. 급식관리		
점검	· 연 1회	· 연 2회 (위생·안전점검 2회, 운영평가 1회)			· 연 1회		

위 법에서 정하지 않는 위생관련 사항은 「식품위생법」에 따름

② (예산)

가. 어린이집

- 영유아보육법 제34조에 따라 어린이집에 재원 아동당 지원하는 보육료에 급식비를 포함하여 지원 중

* 표준보육비용 산정 결과를 토대로 보육료를 산정하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표준보육비용 산정 시 급·간식비 포함

- 15개 시도, 127개 시군구에서 자체 시책사업으로 어린이집 급·간식비 추가 지원 중(24.6월 기준, 지역별 요건 및 금액 상이)

나. 유치원

- 유치원에 지원하는 **유아학비에 급식비를 포함**하며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에 지출 가능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제4조의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의 고시)

-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부담하는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을 전년도 10월 말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학금 2. 수업료 3. **급식비**
 4. 그 밖에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유아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17개 시도 교육청의 정책 추진 상황에 따라 무상급식 등을 시행 중**

③ (인력 기준)

가. 어린이집

- 영유아보육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보육사업안내 201p 참조)에 따라 영유아 100인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영양사를, 영유아 40인 이상(80인을 초과할 때마다 1인씩 증원)을 보유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조리원(조리사)를 두도록 하고 있음

나. 유치원

- 유아교육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유치원에는 영양사 등을 둘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배치하는 직원의 수는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관할청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음

「유아교육법」

제20조(교직원의 구분) ②유치원에는 교원외에 계약의사, 영양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행정직원 등을 둘 수 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4조(직원의 배치기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유치원에는 필요한 경우 직원을 1명 이상 둘 수 있으며, 유치원별 배치기준은 관할청이 정한다.

자료: 교육부

【참고자료 2】 급식위생 관리지원금

□ 개요

- 국회 예산에 따라, 집단급식소 신고의무 대상(50인 이상) 어린이집 중 인건비 미지원 시설 대상 급식위생 관리지원금 신설(월 30만원, 5,789개소)

□ 주요 내용

가. 대상 시설

- 집단급식소 신고 어린이집* 중 인건비 미지원 시설(민간어린이집, 법인·단체등 어린이집 중 일부만 해당)

* 집단급식소 신고 어린이집 중 전월 말 기준 영유아 정원 및 보육교직원 포함 50인 이상 어린이집

나. 지원 규모

- 실제 급식소를 운영하는 어린이집 개소당 월 30만원

다. 지원 방법

- 지자체별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기준 등을 마련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 가능

라. 지원내용

- 식판세척, 집기류 교체, 각종 공과금, 보험료 등 급식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운영비 일부 지원

마. 지원절차

- 어린이집에서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운영비 지원 신청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운영비의 적정 집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지원 기준을 위반하였음에도 허위로 신청하여 지원받은 시설에 대하여는 지원액을 전액 환수

자료: 교육부